**공동연구 협력 계약서**

울산과학기술원 게놈산업기술센터 (이하 “KOGIC” 라 함)와 [공동연구기관] (이하 “공동연구기관” 라 함)은 상호 이익과 신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연구 협력 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이 본 계약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결과”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데이터, 아이디어, 논문, 특허 등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결과물을 의미한다.

②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및 파이프라인 포함), 상표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③ “비밀정보”라 함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물론 본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기타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계약에 따라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 (이하 “연구”라 함)의 내용은 별첨 1의 연구계획서 (이하 “연구계획서”라 함)에 의한다. 연구계획서는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조 (연구기간) 본 계약상 연구기간은 별첨 1의 연구계획서의 공동 연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간은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제5조 (연구의 수행) ①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은 본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질의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동연구기관은 KOGIC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②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은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불합리한 의견이 아닌 한 최대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승인)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타 연구결과 (이하 “최종 보고서 등”이라 함)를 연구계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KOGIC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OGIC은 필요한 경우 최종보고서 등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결과의 귀속)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연구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연구협력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양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9조 (출처 표시) 공동연구기관은 연구로 발생한 연구결과를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연구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본 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기타 그 규정의 성격상 계약종료후에도 적용될 것을 의도하는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등)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기간 내 본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①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은 본 계약 체결 후 주소, 명칭(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 및 본 계약의 이행 및 해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본 계약의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  |
| --- | --- |
| **울산과학기술원 게놈산업기술센터**주소 : 연구책임자 : (인) | [**공동연구기관**]주소 : 연구책임자 : (인) |

**별첨 1**

**데이터 사용 목적, 연구 계획 및 기간**

1. 공유받는 데이터 목록

2. 데이터 사용 목적

3. 연구 계획

4. 데이터 사용 및 연구 기간